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5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운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4월 2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담당하는 해당 단체에 위기 대응과 지원 의무를 더욱 구체화하였고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소중한 생명 보호와 건강한 삶을 북돋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기본이념 수정 및 정의 신설(안 제2조 ~ 안 제2조의2)
- 자살예방 관련 단체장 등의 의무 강화(안 제4조제3항)
-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등 신설(안 제6조)

-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 성별 관련 규정 신설(안 제8조)
- 자살예방의 날 관련 조항 신설(안 제15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자살 위기 현장 출동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등과 자살예방의 날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건강한 삶을 북돋고자 발의된 안전임.
- 주요내용은
 - 안 제2조의2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
 -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수행업무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활동,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,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치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로 규정함.
 -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
 - 안 제15조에서는 자살예방의 날 행사와 교육, 홍보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
-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